

유질개선과 원유의 위생차등 가격제도

이 만 재

서울우유 지도부장

우리나라의 유질은 그 기준부터가 세계수준에 비하여 엄청나게 낮다.

우리 국민들이 1인당 거의 50kg의 우유를 1년간 먹는데 아직 선진국 수준에도 턱없이 적게 먹지만 동양권에서는 꽤 먹고 있고 앞으로 30~40kg는 좀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웬만한 집은 모두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사먹는다.

지금까지는 과거 워낙 못살던 시대에서부터 차츰 주머니사정이 좋아지면서 우선 먹을 것 부터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난 20여년간의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은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제 먹을 것 만큼은 누구나 배불리 먹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배가 부르게 되면 보다 더 맛있는 것, 안전한 것, 위생적인 것 등을 선호하게 된다. 못살던 때는 미군부대 쓰레기 통이라도 뒤져서 고기나 과자 부스러기를 줍어 먹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무슨 식품에 방부제만 있다면, 또 세균이 많다면 금방 그 식품은 팔리지 않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심지어 라면에서도 기름을 공업용으로 쓴 것이라 하여 난리가 난 것도 과거 보릿고개 시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나라 우유가 세계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유질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낙농가들은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유질 개선 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유와 유제품의 수입개방은 낙농의 특성상 완전 개방은 어렵겠지만 만일에 개방이 일부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선 유제품들이다.

마시는 시유, 가공유, 신선치즈(주로 자연 치즈로서 예를들면 피자치즈 같은것), 신선버터, 크림류등이다. 이들은 목장에서 갓搾 원유로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될 수가 없다. 그 양은 총소비량의 약 85% 정도된다. 따라서 100% 수입 개방되어도 85%는 자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 원유에 세균이 많다면 누가 마음 놓고 우유와 치즈를 사 먹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질은 개선에 한계가 있다. 위생 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4년 부터 서울우유가 100% 냉각기, 100%보냉벌크 탱크차로 집유방식을 바꾼 후 그 세균수나 산패 불합격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1988년 이후는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림1, 2, 참조) 그 이유는 유질을 개선해도 낙농가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낙농가가 유질을 개선해서 유제품을 만들어도 낙농가의 노력에 대한 반대 급부가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좋은 제품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 낙농가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며 위생유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원유가격을 지급한다는 현재의 유가제도는 균형의 원칙에서도 어긋난다.

나. 유질의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질이 좋은 원유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과 같은 보상제도라는 점에 낙농선진국의 선택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러한 보상금은 낙농가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위생 유질개선 비용(냉각기상각비, 수도광열비, 관리비, 수선비)등으로 계속 재투자되는 것으로서 결국 국민 보건을 위한 투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유제품의 원가상승 원인에 유제품의 가격인상이라는 소극적인 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국가 경제와 장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상쇄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원유의 냉각에 앞서서 농가가 해야할 유질개선 노력은 목장환경 위생과 착유위생으로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낙농가들이 목장환경과 우사를 주택과 같이 청결히 유지하고 별도의 격리된 원유 저장실과 청결한 우사와 유방관리를 함으로써 원유의 세균수를 2만/ml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제도적인 개선 방법은 법적 규정과 가격제도의 도입이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 나라에서의 경험과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낙농 선진국들에 방법과 자료를 검토해 봄으로서 개선방향 실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덴마크의 경우-원유의 위생 등급제도는 각 협동조합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원유 1ml당 세균수 3-10만을 기준으로 그 하등급의 유가는 감액, 그 상등급은 보상금을 지급하니 전 농가의 93%가 상등급을 받으므로 실질적인 기준은 유질개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형식을 취하는데 있다. 원유의 검사는 덴마크 낙농 연합회가 운영하는 공공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권한은 유가공업체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분석 실험실도 독립되어 있다.

나. 이태리의 경우-지역별,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불랭기 롬바르다 낙농협동조합의 경우 원유 1ml당 세균수 30만을 기준등급 가격으로 하고 상등급에 대하여 차등가액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해 주며 상등급인 1등급(세균수 15만이하)과 2등급(세균수 15-30만) 원유로만 시유생산이 가능하다.

다. 스위스의 경우-협동조합 60%, 정부40%의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원유검사소에서 독립적으로 원유를 검사하며 세균수, 냄새, 이물질등에 의해 등급은 3등급으로 나누어 기준가에서 상등급별로 약 3.7%의 등차액을 두어 보상해 주고 있다.

1등급의 세균수도 3만이하로서 95%이상의 농가가 1등급이며 특별히 우수한 유질 판정을 받은 농가는 생유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라. 미국의 경우-원유의 위생 채취문제를 가장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원유의 등차별 차등액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조절하므로써 상등급 원유생산 농가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유질개선의 노력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되
유질등급은 세균수와 체세포수에 의하여 구분하고 상등급의 기준은
적어도 전체농가의 80% 이상이 포함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차등율은 적어도 기준유가의 5-6%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목장위생 검사에 의한 농가 구분도 제도화 해야 될 것이다.

즉, 정부는 목장의 환경위생 상태와 원유의 위생채취 여부에 따라 A급 농가와 B급 농가를 미리 구분해 놓고 A급 판정 농가의 원유만 A급 원유로 구분하여 B급 원유보다 유대를 기준가격의 약 4.1%를 더 높게 지급되도록 하고 A급 원유중에서 용도별 1, 2, 3급이 나누어지거나 농가수취 가격은 합산 평균 가격으로 지급된다. 또 A급이든 B급이든 세균수 25,000미만/ml이고 체세포수가 30만/ml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1%의 추가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원유는 기준가의 약 5.1%의 추가 유대를 보상금으로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는 그 역사가 100-200년이 넘는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가지 공통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세균수, 체세포수가 극히 적은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 선진국들은 빠짐없이 원유의 위생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2) 이와 같은 원유위생 등급제도에에는 반드시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상위등급의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90% 이상이 포함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 4) 보상금의 차등액 범위는 대개 기준유가의 4-5% 수준이다.
- 5) 검사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중요시 하여 공공기관에서 독립 운용하며 유가공업체나 생산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6) 이러한 낙농 선진국들의 노력의 결과 원유의 세균수는 극히 적어지고 시유 제품의 유효기간도 10-14일로 연장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로 발돋움하는 노력과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또한 생산물의 영양적 보전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유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질향상을 위한 전 낙농인의 공동노력, 즉 전국의 모든 낙농가가 원유 냉각기를 사용하고 집유업체는 위생적인 보냉 벌크탱크 집유방식을 하루 빨리 도입 운영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질개선의 노력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되 유질등급은 세균수와 체세포수에 의하여 구분하고 상등급의 기준은 적어도 전체농가의 80% 이상이 포함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차등율은 적어도 기준유가의 5-6%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목장위생 검사에 의한 농가 구분도 제도화 해야

될 것이다.

세째, 원유의 검사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립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관련 이해 당사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이 제도의 실시에 부연해서 원유의 질적 향상에 따른 시유의 보존 기간도 일주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에 제조업자 표시를 유효기간 표시로 변경해 주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시유를 비롯한 발효유, 아이스크림등과 같은 연가공제품은 반드시 상등급 원료로만 제조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유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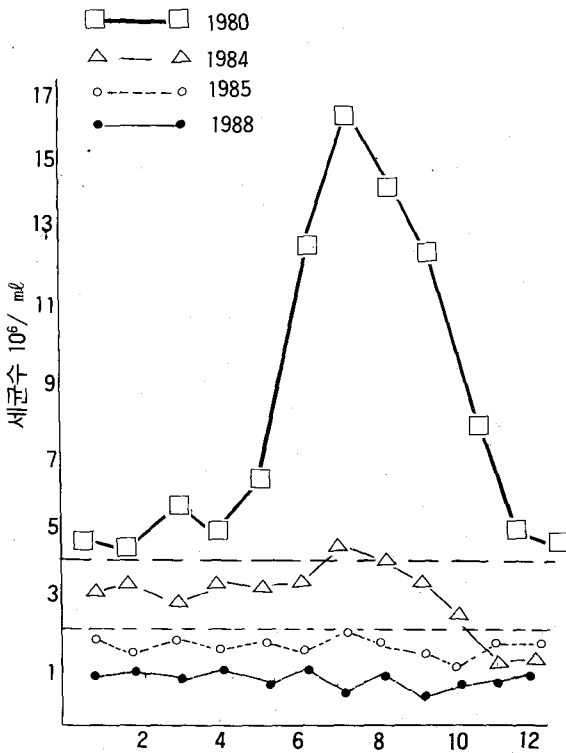


그림1) 원유의 냉각보존과 위생처리에 따른 세균수 변화(서울우유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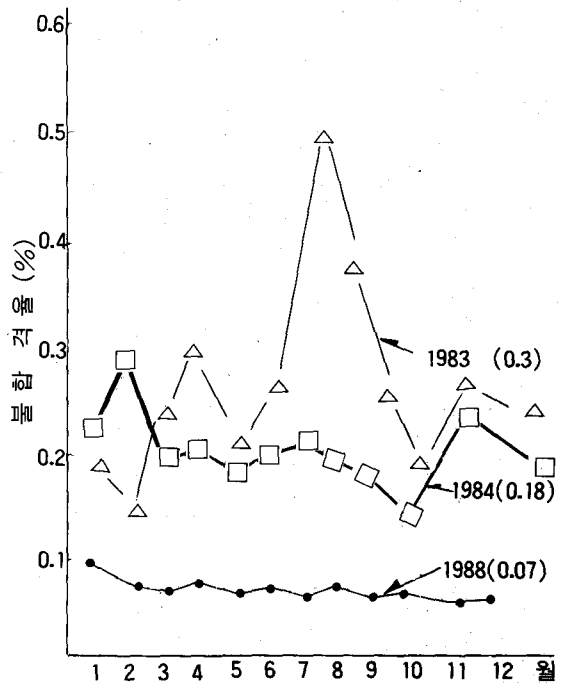


그림2) 원유불합격율의 변화 (서울우유협동조합)

- 0.1% 불합격인 경우 연간 전국 낙농가 65억 손실
- 0.3% 불합격인 경우 연간 전국 낙농가 약 200억 손실
- 서울우유의 경우

연간 1983년도에 48억 손실에서
1988년도에 11억 손실로 감소